

별첨

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

2025. 9. 17.

금융위원회

1 금융권 여신 · 보험

대출심사 등에 중대재해 반영

[신용평가 강화]

□ **(현행)** 은행은 여신심사시 ¹⁾정량·정성요소를 토대로 신용평가를 실시하고, ²⁾추가적인 재무·비재무정보를 감안하여 필요시 신용등급 추가 조정

○ **(신용평가 항목)** 정성요소로서 차주의 기본적 경영·영업위험* 등 평가

* (예) 대주주의 자금력과 평판, 위기관리능력, 내부통제시스템, 노사협력관계 등

○ **(등급조정 항목)** 신용평가 항목 이외 상환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비정형적 요인* 등을 평가

* (예) 영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주요한 법적 사실이 있고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

⇒ 다만, 신용평가와 등급조정항목에 영업현장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음

□ **(개선)** 사망사고 등을 여신심사에 보다 비중 있게 반영토록 조치

○ **(1단계)** ‘중대재해’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반영

○ **(2단계)** 은행권이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평가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한 후* 신용평가 항목 중 영업·경영위험의 배점 상향 조정 추진

* 영업·경영위험 등의 배점을 상향조정할 경우 타 평가항목에 대해서도 전반적 배점 조정 및 숲 은행권 모형 재승인 등이 필요 → 배점 조정은 단기간에 검토·추진키는 곤란

※ [요조치] 은행권 신용평가 기준 개정 (연내)

[한도성 대출약정 보완]

- **(현행)** '신용상태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'되거나 '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법적 분쟁이 발생'한 경우 등을 한도성 여신 감액·정지 요건으로 규정중이나,
 - 일부 은행(6개 은행)은 대출약정에 해당 내용 미반영
- **(개선)** **쏠 은행 한도성 대출약정에 해당 요건 반영 확대***
 - * 다만, 既 실행된 일반 대출에 대한 회수는 제외
 - ※ [요조치] 은행권 대출약정(약관) 개정(연내)

[중대재해 관련 정보 공유]

- 금융권에 중대재해 관련 노동부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, 이를 바탕으로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차주의 신용리스크 측정
 - 노동부 → 신정원, 중대재해 관련 정보* 집중 → 쏠 금융권 공유
 - * 기업의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(고용노동부 정보공유체계 구축 예정)
- ※ [요조치]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정보 공유 법적근거 마련(고용노동부)

주금공 PF보증 심사시 반영

- **(현행)** 신규보증 심사 시 시공사의 부실시공·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업평가 평점에서 5점 감점 적용
- **(개선)**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단계별 확대 적용 등으로 보증심사 감점제도를 강화
 - (예시) ¹단계평가점수 감점* → ²단계평가등급 하향** → ³단계보증 제한
 - * 현재 일률적으로 운영 중인 감점제도를 단계별로 △5점 ~△10점 차등·확대 적용
 - ** 보증심사를 통해 산출한 최종등급(S,A,B,C,D)을 각 1단계씩 하향 조치
- ※ [요조치] HF 내규 (보증료 등의 운용규정, 사업자보증시행세칙 등) 개정(연내)

- 감점제도 적용 수준에 따라, 가산 보증료를 신규 도입*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료율은 상향 조정**

* 가산 보증료율 예시

감점 제도	감점 수준	가산 보증료율
1단계 평가점수 감점	-5점	+0.10%p
	-10점	+0.15%p
2단계 평가등급 하향	등급 하향	+0.20%p

** '안전관리 우수기업'에 대한 우대 보증료율을 0.1%p에서 0.2%p(예)로 확대

※ [요조치] HF 내규 (보증료 등의 운용규정, 사업자보증시행세칙 등) 개정(연내)

보험료 등에 중대재해 반영

[중대재해 사고 여부를 보험료 할인·할증에 반영]

- (현행) 대부분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산정하거나, 3년 이내 사고 미발생시 할인요인으로만 반영
- (개선) 3년 이내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, 동일유형 사고의 반복 발생 여부 등을 보험료 할인·할증(예: △5%~+15%) 요소로 반영

* 적용상품 :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, 건설공사보험,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, 보증보험

※ [요조치] 보험회사별 계약자 개별 할인할증을 개정(연내)

[산업재해 예방인증 우수기업 등 보험료 할인]

- (현행) 현장 안전성에 관한 인증을 보험료 산정에 미반영
- (개선) 안전성 공인 인증(예: 산재 예방 우수기업 인증, ISO 45001)을 받은 기업에 대해 보험료 할인(예: △5%~△10%)

* 적용상품 :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, 건설공사보험,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

※ [요조치] 보험회사별 기초서류 개정(연내)

인센티브 프로그램

- 사전적 안전망 강화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별 우대 금융 프로그램 신규 도입 및 내실있는 운영 확대
 - 사업장 안전관리 우수기업 및 산재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금리·보증료 감면, 한도 확대 등 혜택 제공

※ 운영 중인 주요 프로그램

- (기은) 「ESG경영확인서*(대한상의 발급)」 보유 기업에 대하여 금리감면(최대 $\Delta 1.0\%$ p) 및 대출한도 우대

* S : 산재·질병예방 관리체계, 쏘직원 대상 보건·안전교육 실시 우수기업 등

- (신보·기보) 고위험 산업군(1차금속, 화학, 섬유 등) 기업의 노후설비 교체에 대한 우대보증 운영 (보증비율 90~100%, 보증료 감면 $\Delta 0.1\sim\Delta 0.2\%$ p)

※ 신규 도입 프로그램 (안)

- (산은) 안전설비투자, 노후설비 개선, 안전·방재업종 시설투자 등 안전 관련 신규 시설투자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(중소·중견 $\Delta 0.8\%$ p, 일반 $\Delta 0.4\%$ p)
- (산은) 한국생산성본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ESG 관련 인증·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($\Delta 0.5\%$ p)
- (기은) 산업안전경영 우수기업(산업안전보건공단 선정 안전우수기업 등) 및 산업안전시설 신규투자 기업 우대지원(금리감면·한도확대 검토 중)
- (신보) 산업안전경영 우수기업(산업안전보건공단 선정 안전우수기업 등) 우대보증 도입

- 또한,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* 등 중소 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을 위한 비금융 지원 확대 추진

* (예) 기은 ESG-산업안전 컨설팅 지원사업: 중소기업 산업안전 리스크 진단 및 개선 방안 도출 지원, 임직원 교육·법령점검 등 관련 컨설팅 제공('25년~7월 163건 지원)

※ [요조치] 정책금융기관 신규상품 출시 등 (연내)

2 자본시장 공시·평가·투자

자본시장 공시 확대

[거래소 수시공시 의무화]

(현행)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발생시 공시의무 부재(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의 피해를 입힌 재해만 공시중)

(개선) 상장회사*가 ①중대재해 발생 및 ②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 관련 사실·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

* 상장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비상장 자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사실·현황도 공시

① (중대재해 발생)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현황·대응조치 등을 고용노동부에 보고*한 당일 공시

*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i)발생개요 및 피해상황, ii)조치 및 전망, iii)기타 중요사항 등을 지체 없이 고용부장관(지방청)에 보고(산안법 §54②)

② (중대재해 형사처벌)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형사법원 판결 결과를 확인한 당일 관련 사실·현황을 공시

※ [요조치] 거래소 유가증권시장·코스닥시장·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 (연내)

[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강화]

(현행)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등의 사항은 사업 보고서·반기보고서에 공시 중이나, 중대재해 발생사실은 미공시

(개선) 사업보고서·반기보고서에 공시대상기간* 동안 발생한 중대 재해 현황·대응조치** 등을 공시***하도록 의무화

* 사업보고서 : 최근 3년간 / 반기보고서 최근 2년 6개월간

** 산업안전보건법(§54②)상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(지방청)에 보고하는 사항

*** 상장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비상장 자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사실·현황도 공시

※ [요조치]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(연내)

중대재해 발생사실 등의 ESG 평가·활용 강화

- **(현행)** ESG 평가기관(3개)은 중대이슈(controversy issue) 발생시 ESG 평가에 자율 반영중[평가기관 가이드스(민간자율규제)상 근거 부재]
- **(개선)** 중대재해 발생시 ESG 평가에 반영·활용 의무화
 - ① 중대재해 발생이 확인된 경우 ESG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(평가기관 가이드스상 근거* 명시)
 - * [예] 평가기관은 평가방법론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등 사회적 논란이 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
 - ※ 현재 국내 신평사(한기평, 한신평, NICE)는 신용평가방법론에 ESG 요소 旣반영 중
 - ② 투자대상회사에 중대재해 발생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투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*
 - * (스튜어드십 코드) 투자대상회사 고려요소에 '사회적 신용'을 포함 (가이드라인) '사회적 신용'에 중대재해 등 노동 관련 법 위반이 포함됨을 명시
 - ※ [요조치] ESG 평가기관 가이드스 개정(연내), 스투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('26.上)